

공고 제2025-2호

신고·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

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4제3항 및 제218조의5제5항에 따라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·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8일

주중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



1. 전자우편 주소 : ovchina@mofa.go.kr

※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,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)으로도 신고·신청 가능

2. 접수기간

- 재외선거인 (변경)등록신청기한 : 2025. 4. 24.까지
- 국외부재자신고기간 : 2025. 4. 4.부터 2025. 4. 24.까지

3. 유의사항 : 본인명의로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 신청에 한하여 제출가능

- 붙임 1. 신고·신청 서식 1부.
2.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1부.

<앞쪽>

신고·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☐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¹⁾
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

접 수	접수번호	
	접수일자	
	접 수 자	(서명)

성 명 ²⁾	한 글			영 문 (대문자)		
여 권 번 호				※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.		
신 분 에 따 른 구 분 ³⁾ ※ 현재 주민등록 보유 여부에 따라 해당 칸에 ☑표한 후 기재	☐	주 민 등 록 번 호			-	
	☐	주 민 등 록 이 있 는 사 람	주 소 (주민등록표상)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 (대로·로·길)
	☐	주 민 등 록 이 있 었 던 사 람	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	-		
	☐	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 지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	(대로·로·길)
	☐	생 년 월 일		-		-
	☐	주 민 등 록 이 없 었 던 사 람	등 록 기 준 지 (본 적 지)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·동) (대로·로·길)
		부 모 성 명 ⁴⁾	아버지 성 명		어머니 성 명	
연 락 처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전화번호 ⁵⁾ (가정·직장 등)		(국 가 번 호)	(지 역 번 호)	(전 화 번 호)	
	휴대전화 번 호 ⁵⁾					
	전자우편 ⁶⁾ (E-mail)					
국 외 거 소 ⁷⁾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	거류국명			우편번호	
		주 소	☐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(☑표한 후 "주소" 칸에 공관명만 기재) 투표예정공관 ⁸⁾			
외국국적 보유여부 ※ 복수 국적자만 기재	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?		☐ 예 ☐ 아니오			
	국적보유 국가명					
	외국국적 취득사유		☐ 출생 ☐ 혼인 ☐ 입양 ☐ 인지 ☐ 기타()			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「공직선거법」(제218조의4)·(제218조의5)에 따라 (국외부재자신고)· 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를(을)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		
년 월 일 (신 고 인)·(신 청 인) ⁹⁾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○ ○ 구·시·군의 장 귀하						

※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 신고·신청서를 제출(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)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s://ova.nec.go.kr>)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유 의 사 항

1. 이 신고·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 신고·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·신청인에게 불이익(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3. 거짓으로 신고·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·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 성 요 령

1. “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”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☒ 표시를 하고, “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이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”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☒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2. “성명”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 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3. “신분에 따른 구분”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“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”를 적고,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“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”를 적어야 하며,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☒ 표시 후 “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등록기준지(본적지)”를 적고 “성별”의 해당 칸에 ☒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4. “부모 성명”칸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·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(본적지)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“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”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5. “전화번호”와 “휴대전화번호”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☞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·재외선거인 요건확인,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.
6. “전자우편(E-mail)”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재외선거인명부 등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7. “국외거소”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(한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)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☞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☒ 표시 후 “주소”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.
8. “투표예정공관”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9. 끝부분의 “(신고인)·(신청인)”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

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【국외부재자신고】

- **신고기간** : 2025년 4월 4일(금)부터 2025년 4월 24일(목)까지
- **대 상 자** :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 -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 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- **제 출 처**
 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 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- **제출방법**
 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
 -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)
 - 전자우편(ovchina@mofa.go.kr)
 - 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- **제출서류** : 국외부재자신고서

【재외선거인 (변경)등록신청】

☐ **신청기한** : 2025년 4월 24일(목)까지

☐ **대 상 자**

○ 등록신청

-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
- 직전 선거(제22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
○ 변경등록신청

- 직전 선거(제22대 국회의원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
-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)에 변경이 있는 사람

☐ **제 출 처** :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

☐ **제출방법**

○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

○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)

※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.

○ 전자우편(ovchina@mofa.go.kr)
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
☐ **제출서류** :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

※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.(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)